

# 2026년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 모집공고

지역 중소기업에 맞춤형 지식재산 서비스를 지원하는 ‘지식재산 긴급지원’ 사업의 2026년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## □ 사업개요

-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중소기업 경영 현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지식재산 애로 사항을 수시로 상담하고,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적시 해결하는 긴급지원 서비스

## □ 지원대상

- 지역소재 중소기업 (「중소기업 기본법」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)

## □ 접수기간

- 사업공고 : 2026. 6. 8(월) ~ 6. 19.(금)
- 달서구소재기업만 특허맵, 홍보영상, 신규브랜드, 포장디자인개발 신청가능
- 출원비용신청기업은 대구시 소재 모든기업 신청가능
- \* 본 사업은 분기별로 공고모집하며, 지역센터별 예산 소진 현황에 따라 사업 신청 및 운영 기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, 반드시 해당 지역센터의 공지사항(<https://www.ripc.org/pms>)을 확인하여 신청

## □ 신청방법

- 지원사업 신청시스템(<https://www.ripc.org/pms>)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\*
- \* 신청시스템 접속(<https://www.ripc.org/pms>) → 회원가입 → 로그인 → 지원사업관리 → 지원사업공고 → 해당 지역센터 공고문 선택 → 지원사업 신청
- 제출서류 : 신청서·사업추진(활용)계획서 및 필수(선택) 첨부 서류
- \* 과거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활용 시 불선정 처리(양식준수)

## □ 지원절차

- 신청·접수 → 서류검토 및 기업상담(현장방문 등) → 선정심의(지원여부

결정) → 사업수행사(협력기관) 선정·지원 → 지원사업 결과물 제공

\* 감염병·천재지변의 경우 일부 절차는 비대면으로 진행될 수 있음

## ☐ 지원규모

o 기업 당 2,000만원 이내(지원금 합산 기준, 자부담 제외)

\* 단, 제품디자인개발 및 목업 연계 지원 시 정부지원금 일부 초과 가능

## ☐ 기업분담금

o 기업분담금 : 40%(현금20%+현물20%)

\* 소상공인, 여성기업, (예비)사회적기업의 경우 현금 10%+현물 30% 적용(증빙 제출)

\* 국내·해외출원지원의 경우 현금 40%

## ☐ 지원내용

o 지식재산 전문가의 IP현안 진단을 통해 컨설턴트 직접컨설팅을 제공하고, 외부기관(분야별 전문기관)과 함께 국내맞춤 특허·디자인전략, 디자인·브랜드 개발, 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, 국내·해외출원비용 등을 지원

<지식재산 긴급지원 세부지원내용>

| 구분         | 세부 사업명           |        | 정부지원금 규모    | 분담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특 허        | 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       |        | 9,000천원 이내  | 40%<br>(현금20%+현물20%)<br>단 (예비)사회적기업 소상공인<br>여성기업의 경우 현금 10%<br>+ 현물 30% 적용 |
|            | 특허맵(국내)          |        | 9,000천원 이내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디자인        | 디자인맵(국내)         |        | 9,000천원 이내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| 제품디자인개발          |        | 16,000천원 이내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| 제품디자인목록업         |        | 6,000천원 이내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| 포장디자인개발          |        | 9,000천원 이내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| 화상디자인 개발(UX·UI)  |        | 9,000천원 이내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| 화상디자인 개발(GUI 중심) |        | 6,000천원 이내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브랜드        | 신규브랜드개발          |        | 14,000천원 이내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| 리뉴얼브랜드개발         |        | 6,000천원 이내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국내출원<br>지원 | 특허               |        | 1,800천원 이내  | 현금 40%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| 실용신안             |        | 1,020천원 이내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| 상표               |        | 420천원 이내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| 디자인              |        | 480천원 이내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해외출원<br>지원 | 특허(PCT)          |        | 2,280천원 이내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| 특허<br>(개별국)      | 미 국    | 4,020천원 이내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유 럽    | 5,700천원 이내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중 국    | 3,480천원 이내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일 본    | 3,540천원 이내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특수국*   | 4,200천원 이내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동남아/기타 | 2,520천원 이내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| 상 표              |        | 2,100천원 이내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| 디자인              |        | 2,400천원 이내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※ 특수국 : 중동, 캐나다, 브라질, 러시아, 호주, 싱가포르

※ 세부 지원내용 및 정부지원금 규모는 일부 변경될 수 있음

<과업별 주요 지원내용>

| 구분      | 세부사업명            | 지원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특허      | 특허맵(국내)          | 특허에 대한 국내 맞춤형 조사·분석을 통해 R&D 방향제시 및 특허 활용전략 수립 |
|         | 특허기술 홍보영상제작      | 국내 등록된 특허기술을 국내외 홍보 마케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영상 제작     |
| 디자인     | 디자인맵(국내)         | 디자인에 대한 국내 맞춤형 조사·분석을 통해 디자인개발 방향·활용전략 수립     |
|         | 제품디자인 개발         | 제품, 포장 디자인 개발 또는 디자인 목업 제작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| 제품디자인 목업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| 포장디자인 개발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| 화상디자인 개발(UX·UI)  | 제품을 기반으로 화상으로 구현되어 인식되는 디자인에 대한 개발(UX·UI)     |
|         | 화상디자인 개발(GUI 중심) | 제품을 기반으로 화상으로 구현되어 인식되는 디자인에 대한 개발(GUI중심)     |
| 브랜드     | 신규브랜드 개발         | 기업 브랜드(C) 또는 제품 브랜드(B) 신규 개발 및 리뉴얼            |
|         | 리뉴얼브랜드 개발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국내출원 지원 | 특허               | 국내 출원을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| 실용신안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| 상표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| 디자인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해외출원 지원 | 특허(PCT)          | 해외 출원을 지원<br>(대리인 비용, 번역료, 출원 관납료 등을 지원)      |
|         | 특허(개별국)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| 상표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| 디자인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□ 선정평가

- o ① [신속진단KIT] → ② 우대가점 → ③ 세부 선정심의(정량, 정성평가 합산)  
→ ④ 최종 지원여부 결정

### <선정 평가 항목>

| 구분   | 항목                      | 배점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정량   | 신속진단 KIT 점수(현장실사 결과 반영) | 42              |
| 정성   | 지원사업 필요성                | 20              |
|      | 지원사업 활용가능성              | 20              |
|      | 수혜사업의 수행의지              | 20              |
| 우대가점 |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기업        | 예 (1) / 아니오 (0) |
| 총점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103             |

### <신속진단 KIT>

| 번호   | 문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표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   | [지원 필요성] 지식재산 긴급지원이 필요한 기술(제품, 서비스 등)이 있는가?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없음 / 있음                  |
| 2    | [제품 출시] 신청 기술은 시장 출시계획이 되어있는가?<br>* 제품출시계획서, 수출계획서, 기술개발완료 문서 등 관련 증빙 보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없음 / 1년 이내 / 6개월 이내      |
| 3    | [IP 보유현황] 신청일 기준으로 등록유지하는 지식재산권(특허, 디자인, 실용신안, 상표) 건수는 몇 건입니까?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건 이상 / 3~4건 / 1~2건 / 0건 |
| 4    | [IP 출원현황] 신청일 기준 최근 3년간 지식재산권(특허, 디자인, 실용신안, 상표) 출원 건수는 몇 건입니까?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건 이상 / 3~4건 / 1~2건 / 0건 |
| 5    | [IP 분쟁 위험도] 경쟁사와 특허침해 및 기술 분쟁 가능성이 있는가?<br>* 특허침해 관련 경고장 등 관련 증빙 보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없음 / 있음                  |
| 6    | [기술 우수성] 공인 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인증 및 지식재산 관련 수상경력이 있습니까?<br>* NT, KT, EM, IT, ET, EEC, CT, NET, NEP, Inno-Biz, ISO, 벤처기업 인증, 특허기술 상, 국내외 발명전시회 수상 등 관련 증빙 보유 | 없음 / 1~2건 / 3건 이상        |
| 7    | [IP 상담이력]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하여 IP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?<br>- IP 상담확인서 등 관련 증빙 서류 제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없음 / 있음                  |
| 8    | [IP 관심도] 이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최근 1년간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을 수강하였는가?<br>- 교육 수료증 등 관련 증빙 서류 제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없음 / 있음                  |
| 9    | [사업화 준비] 신청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인력, 시설 등 인프라를 갖추고 준비되어 있는가?<br>* 인력조직도, 보유 시설·장비 목록, 양산·제조 공정 개요서, 시험·인증·성능검증 계획서(결과서) 등 관련 증빙 보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없음 / 구축예정 / 구축완료         |
| 10   | [참여 의지] 이 사업에 대표가 참여하는가?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미참여 / 참여                 |
| 11   | [투자유치] 최근 1년간 제품 출시를 위해 기술금융 대출이나 외부 투자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?<br>* 대출약정서, 투자계약서 등 관련 증빙 보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없음 / 있음                  |
| 동의   | [사업참여의사]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추천한 협력기관과 지원사업을 진행하겠는가?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동의(체크박스)                 |
| 총 점수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# <신속진단 KIT Check List>

| 번호             | Check List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  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기본<br>확인<br>서류 | ① 사업자등록증(중소기업확인 : <a href="http://sminfo.mss.go.kr">http://sminfo.mss.go.kr</a> )<br>(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인 경우 이전 사업자 등록증 포함)<br>② 전년도 재무제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 1              | ◇ [활용계획서]에 기재된 제품(기술, 서비스 등) 관련 내용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항목 1    |
| 2              | ◇ [활용계획서]에 기재된 제품 출시 계획에 관한 내용 확인<br>※ 특허맵(국내)·디자인맵(국내), CI는 활용계획서/현장실사 등을 통해 특허디자인창출/CI 적용시기 등을 판단하여 점수 부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항목 2    |
| 3              | ◇ 주관기업 보유 지식재산권(특허/실용신안/디자인/상표)의 국내·외 각각 출원번호 통지서/등록증 또는 등록원부 인정<br>※ 출원인이 주관기업으로 되어 있는 건만 카운팅(개인 불인정)<br>-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명의 확인<br>※ 해외 출원번호 통지서 또는 등록 확인서<br>※ 등록원부 : 지식재산처 홈페이지( <a href="http://www.moip.go.kr">www.moip.go.kr</a> )에서 조회 출력 | 항목 3, 4 |
| 4              | ◇ 기업의 선택 사항을 기초로, '경쟁사 지식재산권 침해가능성'의 경우 관련 IP등록상태, 언론보도,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항목 5    |

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  | 경고장 등의 자료를 기초로 컨설턴트가 최종판단. 침해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<br>현안보고서에 침해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이유 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
| 5 | ◇ 각종 수상경력서 / 기술경쟁력 우수기업 증빙서류 사본 등 증빙서류 확인<br>※ NT, KT, EM, IT, ET, EEC, CT, NET, NEP, Inno-biz, ISO, 메인비즈, 벤처 등     | 항목 6 |
| 6 | ◇ 신청기업에서 작성한 IP상담 확인서 등 증빙서류 확인<br>※ 방문상담(센터방문, 신청기업방문)만 인정 (전화상담 제외)<br>※ 공식적으로 작성된 IP상담 확인서가 없더라도 상담사실 인정 시 점수 부여 | 항목 7 |
| 7 | ◇ 지식재산 관련 외부교육 및 온라인교육 확인서 및 수료증 등 증빙서류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항목 8 |
| 8 | ◇ 인력조직도, 보유 시설·장비 목록, 양산·제조 공정 개요서 등 사업화 관련 내용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항목 9 |
| 9 | ◇ 대출약정서, 투자계약서 등 대출·투자 관련 내용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가점항목 |

## □ 문의처

- 지식재산센터(<https://www.ripic.org/pms>, 대표전화 1661-1900)를 통한 상담 및 신청

| 구분 | 센터명  | 문의처          | 구분 | 센터명    | 문의처          |
|----|------|--------------|----|--------|--------------|
| 1  | 서울센터 | 02-2222-3856 | 14 | 전남센터   | 061-242-8587 |
| 2  | 경기센터 | 031-500-3043 | 15 | 광주센터   | 062-604-9241 |
| 3  | 인천센터 | 032-810-2881 | 16 | 전북센터   | 063-252-9301 |
| 4  | 강원센터 | 033-749-3331 | 17 | 제주센터   | 064-755-2554 |
| 5  | 충남센터 | 041-559-5752 | 18 | 경기남부센터 | 031-244-8321 |
| 6  | 대전센터 | 042-933-7821 | 19 | 경기북부센터 | 031-539-5163 |
| 7  | 충북센터 | 043-229-2738 | 20 | 강원서부센터 | 033-254-6580 |
| 8  | 세종센터 | 044-998-7773 | 21 | 강원남부센터 | 033-552-5555 |
| 9  | 부산센터 | 051-714-6957 | 22 | 충북북부센터 | 043-843-7005 |
| 10 | 울산센터 | 052-228-3085 | 23 | 경북북부센터 | 054-859-3093 |
| 11 | 대구센터 | 053-222-3146 | 24 | 경북서부센터 | 054-454-6601 |
| 12 | 경북센터 | 054-274-5533 | 25 | 경남서부센터 | 055-762-9411 |
| 13 | 경남센터 | 055-210-3098 | 26 | 충남서부센터 | 041-663-0041 |

## □ 기타사항

- 본 사업은 담당 컨설턴트의 실사 선정심의 결과 등에 따라 최종 지원 서비스가 확정되며, 선정 결과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
-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은 기업 당 총 2개년(연속지원 가능) 지원 가능하며, 신청 건별 선정 과정 필요
- 동일한 내용에 대해 타 기관에서 동일한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될 수 있음

-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 안내 : <http://www.kipa.org/ip-job/>
- 지식재산 긴급지원, 소상공인 IP창출지원, IP나래 프로그램 사업 간 당해 연도 중복지원 가능하나, 지원건수는 최대 2건으로 제한됨

**< '26년 RIPC 사업 간 중복지원 기준 >**

| 구분         | 소상공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IP 나래 | 긴급지원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|
| 지원대상       | 소상공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창업기업  | 중소기업 |
| 중복제한<br>기준 | (원칙) 소상공인 IP창출지원 - IP나래 - 지식재산긴급지원 사업 간 허용(최대 2건) |       |      |
|            | (예외) 후속지원 포함 동일 내용 지원 금지(특허맵, PCT, 상표 등)          |       |      |

\* 특허전략개발원의 IP-R&D사업과도 중복지원 제한 해제

- 신청서 내용은 “참고1 2026년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 신청서” 참조

- 이하 여백 -

## [붙임] 세부 사업 지원 내용

### 1 특허기술홍보영상 제작

#### □ 사업목적

- 문서화된 특허기술을 3차원(3D) 홍보영상으로 제작하여 제공함으로써 특허기술에 대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화 추진을 촉진

#### □ 지원내용

- 등록된 특허기술 내용을 그래픽, 내레이션 등을 통해 3차원 시뮬레이션 홍보영상으로 제작하여 제공

#### □ 지원기준

- 신청일 현재 권리가 등록 되어있는 특허·실용신안

#### □ 지원규모

- 세부사업별 원가조사 금액(기업분담금(현금+현물) 및 VAT 포함)을 기준으로 기업분담금(현금20%+현물20%)을 제외한 60% 이내로 계약  
\* (예비)사회적기업, 소상공인, 여성기업의 경우 기업분담금(현금 10% + 현물 30%)을 제외한 60% 이내로 계약
- 지원산출물 : 최종결과물(홍보영상 등)

#### □ 과업기간

- 계약체결일로부터 120일 이내

☐ 사업목적

- 특허기술에 대한 국내 맞춤형 조사분석을 통하여 연구기술 개발 방향 제시 및 특허 활용 전략수립 등 자료제공

☐ 지원내용

- 요청한 기술과 관련된 국내 특허기술 동향을 조사·분석하고, 수혜기업이 필요한 세부 활용 전략을 수립하여 국내 맞춤형 특허전략 보고서 작성 등 지원

☐ 지원기준

- 특허조사분석이 필요한 기술에 한함

☐ 지원규모

- 세부사업별 원가조사 금액(기업분담금(현금+현물) 및 VAT 포함)을 기준으로 기업분담금(현금20%+현물20%)을 제외한 60% 이내로 지원  
\* (예비)사회적기업, 소상공인, 여성기업의 경우 기업분담금(현금 10% + 현물 30%)을 제외한 60% 이내로 계약
- 지원산출물 : 최종보고서, 국내 특허출원 1건(필요시)

☐ 과업기간

-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

## □ 사업목적

- 디자인 기술에 대한 국내 맞춤형 조사·분석을 통해, 연구기술 또는 디자인 개발 방향제시 및 디자인 활용 전략수립에 필요한 자료 제공

### <특허맵(국내)과 디자인맵(국내)의 차이점>

- 특허맵(국내)은 특허기술에 대한 국내 시장 맞춤형 조사분석을 통하여 연구기술 개발 방향제시 및 특허 활용 전략수립 등의 자료제공을 주목적으로 함.
- 디자인맵(국내)은 이와 달리 국내 디자인 지식재산권 정보를 가공, 분석하여 제공하는 디자인 정보 인프라로 볼 수 있으며 등록디자인을 대상으로 한 DB검색, 이미지 맵핑, 포지셔닝 맵핑, 통계분석 기능을 제공하고 인터넷 공지디자인과 시장에 있는 디자인 현황을 통해 최신 트렌드 정보, 기술 디자인 정보 등 디자인 개발과 연구 및 전략수립을 지원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함.

## □ 지원내용

- 수혜기업의 기능 및 성능이 향상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디자인 개발을 위한 전략 및 로드맵 제시

### <디자인맵(국내)이 필요한 기업>

- 장기적인 디자인 개발 전략 수립이 필요한 기업
- 디자인 아이덴티티(브랜드·제품 디자인) 일관성이 부족한 기업
- 양산 예정 제품이 아이디어 단계로, 디자인 방향의 구체화가 필요한 기업
- 국내·외 시장의 디자인권 현황을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는 기업
- 제품·포장 디자인 개발 이전에 명확한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이 필요한 기업
- \* 본 사업은 디자인을 개발하거나 권리화를 지원하는 사업이 아님

## □ 지원규모

- 세부사업별 원가조사 금액(기업분담금(현금+현물) 및 VAT 포함)을 기준으로 기업분담금(현금20%+현물20%)을 제외한 60% 이내로 지원
  - \* (예비)사회적기업, 소상공인, 여성기업의 경우 기업분담금(현금 10% + 현물 30%)을 제외한 60% 이내로 계약
- 지원산출물 : 최종보고서, 국내 디자인출원 1건(필요시)

## □ 과업기간

-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

## □ 사업목적

- 지역 중소기업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제품·포장·화상 디자인을 개발하고 권리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디자인 보호

### <제품디자인·포장디자인·화상디자인의 구분>

- 제품디자인은 산업디자인 영역에 해당하며, 제품의 형태·색채·질감·재료 등 외형적 요소에 대한 연구를 통해 조형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. 아울러, 제품의 사용성과 기능성을 고려한 디자인까지 포함됨.
- 포장디자인은 시각디자인 영역에 해당하며, 소비자에게 상품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구매 욕구를 증진시키는 동시에, 상품을 안전하게 보호·운반할 수 있도록 하는 입체적 디자인을 의미.
- 화상디자인은 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구현되어, 일시적인 발광 현상에 의해 시각적으로 인식되는 모양 및 색채로 구성된 디자인을 의미.

## □ 지원내용

- 제품디자인 개발, 포장디자인 개발, 화상디자인 개발로 구분하여 지원

## □ 지원기준

- 제품디자인 개발 : 자체상품의 제품디자인 개발 지원
- 포장디자인 개발 : 제품의 포장 및 패키지 디자인 개발
- 화상디자인 개발 : 제품을 기반으로 표시화면을 통하여 표현되는 디자인을 화상으로 구현하는 디자인에 대한 개발

\* 키오스크 같이 (특허)기술이 적용제품의 액정화면에 한하며 단순한 어플 또는 웹디자인 제외

## □ 지원규모

- 세부사업별 원가조사 금액(기업분담금(현금+현물) 및 VAT 포함)을 기준으로 기업분담금(현금20%+현물20%)을 제외한 60% 이내로 지원

\* (예비)사회적기업, 소상공인, 여성기업의 경우 기업분담금(현금 10% + 현물 30%)을 제외한 60% 이내로 계약

- 지원산출물 : 최종보고서, 국내 디자인출원 1건

\* 포장디자인 : 포장디자인 샘플 포함

## □ 과제기간

- 제품디자인 개발 :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
- 포장디자인 개발 : 계약체결일로부터 75일 이내
- 화상디자인 개발 :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

## □ 사업목적

- 지역 중소기업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제품디자인에 맞는 목업을 제작 지원함으로써 해당제품의 경쟁력 강화 및 디자인 개선방향 도출

## □ 지원내용

- 중소기업의 제품에 대한 목업 제작지원

## □ 지원기준

- 제품디자인 개발 지원 과제\*에 한하여 연속 지원
  - \* 당해연도 및 직전년도 제품디자인 개발 지원과제
- 제품디자인개발 지원과 연계하여 제품디자인 목업 제작 지원 시, 협력기관을 단일화하여 병행지원 가능

## □ 지원규모

- 세부사업별 원가조사 금액(기업분담금(현금+현물) 및 VAT 포함)을 기준으로 기업분담금(현금20%+현물20%)을 제외한 60% 이내로 지원
  - \* (예비)사회적기업, 소상공인, 여성기업의 경우 기업분담금(현금 10% + 현물 30%)을 제외한 60% 이내로 계약
- 지원산출물 : 제품디자인 목업(전시모형)

## □ 과업기간

-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

## □ 사업목적

- 지역 중소기업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브랜드를 개발하고 권리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상표 보호

## □ 지원내용

- 마케팅기획분석 : 내·외부환경분석, 소비자분석 등
- 마케팅전략구축 : STP, 브랜드전략 구축 등
- 브랜드 네이밍 : 부정연상 검토, 권리화가능성 검토, 네임 도출 등
- 브랜드디자인 개발 : 컨셉 연구, 디자인 도출, 기본/응용디자인 개발 등
- IMC전략 구축 :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활용 전략 등

## □ 지원기준

- 신규브랜드 개발과 리뉴얼브랜드 개발로 구분하여 지원
  - 기업브랜드(CI) 개발 또는 제품브랜드(BI) 개발

### <신규브랜드개발과 리뉴얼브랜드개발의 차이점>

- 신규브랜드 개발은 브랜드(CI, BI) 변경이나 신제품 개발 등 새로운 브랜드가 필요할 경우, 네이밍을 포함하여 브랜드디자인까지 개발 지원
- 리뉴얼브랜드 개발은 기존에 기업이 사용하는 브랜드(CI, BI) 네이밍은 사용하되, 로고디자인 등 브랜드 이미지가 트렌드에 맞지 않거나 노후화되어 개선이 필요한 경우 지원

## □ 지원규모

- 세부사업별 원가조사 금액(기업분담금(현금+현물) 및 VAT 포함)을 기준으로 기업분담금(현금20%+현물20%)을 제외한 60% 이내로 지원
  - \* (예비)사회적기업, 소상공인, 여성기업의 경우 기업분담금(현금 10% + 현물 30%)을 제외한 60% 이내로 계약
- 지원산출물 : 최종보고서, 국내 상표출원 1건

## □ 과제기간

- 신규브랜드 개발 :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
- 리뉴얼브랜드 개발 : 계약체결일로부터 75일 이내

## □ 사업목적

- 자금 및 인력 부족 등으로 국내 권리 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국내 산업재산권 창출을 도모하여 중소기업의 지재권 기반 성장력 확보

## □ 지원대상

- 사업에 선정 완료된 중소기업

## □ 지원내용

- 국내출원(특허·실용신안·상표·디자인)을 지원

## □ 지원기준

- 신청기업의 국내보유 기술에 대한 활용 및 등록 가능성을 고려하여 국내 출원을 지원
- 기타 참고사항
  - 출원번호 1개당 1건으로 인정 지원
  -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명의의 출원만 인정,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출원만 인정
  - 공동출원인 경우 아래의 공동출원 인정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지원

| 지식재산 긴급지원 수혜자 | 공동출원 대상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중소기업          | 중소기업 / 개인사업자(대표자)<br>대학 / 정부출연연구기관 |
| 개인사업자(대표자)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\* 공동출원 대상자의 해외출원비용 보조금 지급 포기각서 동시제출

- 변경출원, 분할출원,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 건 지원 불가
- 국내 출원일 기준 1개월 이내 취하나 포기된 경우 지원금 환수
- 지원비용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지원대상자가 지원 불가한 타 지역으로 이동한 경우 지원 중단

## □ 지원규모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 | 세부사업명  | 정부지원금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|
| 국내출원<br>지원             | 특허     | 1,800천원 이내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실용신안   | 1,020천원 이내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상 표    | 420천원 이내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디자인    | 480천원 이내   |
| 자부담                    | 현금 40% |            |
| ※ 정부지원금 지원금액 한도까지만 지원함 |        |            |

## □ 사업목적

- 자금 및 인력 부족 등으로 해외 권리 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해외 지재산권 획득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

## □ 지원대상

- 사업에 선정 완료된 중소기업

## □ 지원내용

- 신청기업의 국내 특허출원 또는 국내 보유 기술에 대해 해외 출원(특허·실용신안·상표·디자인)을 지원
  - \* 개별국 직접출원, PCT출원, 마드리드 출원, 헤이그 출원 등 해외 지식재산권 획득을 위한 모든 출원 가능

## □ 지원기준

- 권리별 개별국 : 신청기업의 국내특허출원 또는 국내보유기술에 대해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출원 지원(단, 국문명세서 제출)
- PCT출원 : 신청기업의 국내특허출원 또는 국내보유기술에 대해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출원 지원(단, 국문명세서 제출)
- 국제상표출원 : 국내 출원 또는 등록된 상표에 한함
- 국제디자인출원 : 국내출원이 존재하지 않아도 가능
- 기타 참고사항
  - 국내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도 신청 가능
  - 개별 출원번호 당 1건으로 처리
  -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명의의 출원만 인정하며,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출원만 인정

－ 공동출원인 경우 아래의 인정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지원

| 지식재산 긴급지원 수혜자 | 공동출원 대상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중소기업          | 중소기업 / 개인사업자(대표자)<br>대학 / 정부출연연구기관 |
| 개인사업자(대표자)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※ 지원 포기 시 공동출원 대상자의 해외출원 보조금 지급 포기각서 동시제출

- － 변경출원, 분할출원,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 건 지원 불가
- － 대리인(변리사)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
- － 국내 출원무효, 반려된 건은 지원 불가
- － 해외 출원일 기준 1개월 이내 취하, 포기된 경우 지원금 환수
- － 지원비용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지원대상자가 지원 불가한 타 지역으로 이동한 경우 지원 불가

## □ 지원규모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세부사업명       |        | 정부지원금 규모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|
| 해외출원<br>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특허(PCT)     |        | 2,280천원 이내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특허<br>(개별국) | 미 국    | 4,020천원 이내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유 럽    | 5,700천원 이내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중 국    | 3,480천원 이내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일 본    | 3,540천원 이내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특수국*   | 4,200천원 이내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동남아/기타 | 2,520천원 이내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상 표         |        | 2,100천원 이내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디자인         |        | 2,400천원 이내 |
| 자부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현금 40%      |        |            |
| ※ 자부담을 제외하고 지원해야 할 금액이 지원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금액 한도까지만 지원 |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|
| ※ 유럽 개별국 지원 시 : 현재 특허출원 유럽기준 내 각 국가별 소요금액에 따른 운영지원    |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|
| ※ 특수국 : 중동, 캐나다, 브라질, 러시아, 호주, 싱가포르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|